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804

발의연월일: 2022. 2. 22.

발 의 자: 박완수 · 배준영 · 김성원

이종배 · 김용판 · 서일준

최춘식 • 이명수 • 최형두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하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용원자로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5

조의2제1항 등).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의2제1항 중 "발전용원자로 및"을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	①
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u>발전용원자로</u>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	연구용원자로 및
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
	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